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황운하 · 서왕진
강경숙 · 정춘생 · 이수진
박희승 · 권향엽 · 이주희
김재원 · 손명수 · 신장식
이해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스마트폰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.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, 수면 부족,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,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,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).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) ①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
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
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전문가
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제52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
4.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(생략)

③ (생략)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